

국방희망나눔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국방희망나눔’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과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① 국방조달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조달참여 활성화
- ② 장병 위문공연, 군독서문화 향상, 군부대 후원 등 공익봉사 활동
- ③ 회원사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지원
- ④ 회원 간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
- ⑤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

제3조 (사업)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공익사업
 1. 군납신문 창간 및 국방조달 관련 전문 정보 제공
 2. 야전부대 위문공연 및 정훈·문화활동 지원
 3. 장병 독서문화 및 군복지 향상 사업
 4. 군부대 및 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봉사·후원 활동
- ② 수익사업
 1. 광고사업
 2. 국방조달 관련 용역 및 중개서비스
 3. 포럼·박람회·컨벤션 등 행사 기획·운영
 4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수익사업
- ③ 자체사업
 1. 교육 프로그램 운영
 2. 포럼·세미나·워크숍 개최

3. 전문컨설팅 제공
4. 회원사 경쟁력 강화 지원

④ 친목사업

1. 회원사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행사
2. 친목 및 단합행사 등 유대강화 활동

⑤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에 둔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- ① 이 단체의 회원은 본 협의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
- ② 법인·단체 회원은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지정한 임직원을 본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③ 개인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, 법인·단체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(법인)은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여 총회 등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③ 회원은 단체의 사업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, 대표자는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보고 의무를 진다.
- ④ 법인회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,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단, 회원 탈퇴

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제8조 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(상근)
2. 고문 3인 이내(비상근 포함)
3. 자문위원(위촉): 별도 지정
4. 부회장 비상근 3~4인
5. 총괄사무국장 1인(상근)
6. 기획이사 : 1인(상근)
7. 홍보이사 : 1인(비상근)
8. 행사이사 : 1인(비상근)
9. 기업이사 : 3~4인(비상근)
10. 친목이사 : 1명(비상근)
11. 감사 1인

② 필요 시 추가 임원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
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,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.

제9조 (임원의 자격 및 선임)

① 임원의 자격은 본회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로 한다.

② 회장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며,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.

- ③ 기타 임원(이사)은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.
- ④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-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.
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중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의장 유고 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괄사무국장은 실무를 총괄하고 각 이사 업무를 조정하며, 사무국 운영을 책임진다.
- ④ 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기획이사: 단체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외전략 총괄
 - 2. 행사이사: 행사기획, 박람회, 포럼 등 실행업무 담당
 - 3. 기업이사: 회원사 지원, 경영컨설팅 및 협력사업 추진
 - 4. 홍보이사: 언론·온라인홍보 및 대외 이미지 제고

5. 친목이사: 회원 간 교류 및 친목행사 주관

- ⑤ 감사는 회계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, 필요 시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, 단체의 주요 정책과 대외 협력 활동에 대해 조언한다.
- ⑦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요청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괄사무국장, 각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-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, 임시운영위원회는 이 단체 설립 등록을 할 때와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운영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5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방식 및 책임범위)

-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, 사업계획 승인, 예산안 확정 및 정관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.
- ③ 운영위원은 단체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의결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은 단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

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.

제16조 (총회)

-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,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
- ②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 (회의록)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한 운영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 (설치와 구성 및 임면)

- ① 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총괄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실무부서를 운영한다.
- ② 사무국 내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·변경할 수 있다.
-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총괄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 (재산의 구분)

- ①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된 재산 및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- ③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2조 (수입금 및 분배)

- ①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(기부금)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- ② 단체에서 얻은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원은 가입 시 입회비 금 2,000,000원(금 이백만 원)을 납부하며, 매년 연회비 금 300,000원(삼십만 원)을 납부한다.
- ④ 회비 납부 방법 및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23조 (출자 및 용자)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-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③ 기부금 수입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5조 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(기부)하도록 한다.

제28조 (운영규정)

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‘운영규정’에 따른다.

② 운영규정에는 회원 관리, 회비 납부, 행사운영, 자문위원 위촉, 인사규정 등을 포함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5.11.25.부터 시행한다

위 비영리단체 **국방희망나눔**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
2025년 11월 00일

회장 허 성 필 (인)

고문 한 민 구 (인)

고문 이 영 우 (인)

고문 김 을 호 (인)

부회장 민 근 식 (인)

부회장 장 해 식 (인)

부회장 권 형 남 (인)

총괄사무국장 지 윤 백 (인)

기획이사 김 의 중 (인)

홍보이사 김 정 길 (인)

행사이사 이 종 훈 (인)

기업이사 한 상 욱 (인)

기업이사 황 경 섭 (인)

기업이사 강 평 화 (인)

친목이사 황 규 진 (인)

감 사 이 지 환 (인)

국방희망나눔